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in terms of Necessity
and Role of the Family Center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이 선 형**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 사 배 지 연***

Depar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 Lee, Sunhyung
Depar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Ph.D. Bae, Ji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자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자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자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매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입양가족서비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족, 다양한 가족

*본 연구는 교내학술연구비로 작성된 논문임(과제번호 20210446)/ IRB 승인번호 1041231-210615-HR-126

**주저자: 이선형(yisunh@hoseo.edu), <https://orcid.org/0000-0001-7938-3996>

***교신저자: 배지연(jybae413@daum.net), <https://orcid.org/0000-0001-7973-1954>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Family Center's programs for adoptive families by interviewing employees at these centers and at Adoption Agencies who have experiences with adoption programs. For this study, nine such workers from three separate Family Centers and three such workers from two separate Adoption Agencies have (voluntarily) engaged in in-depth interviews. Major findings from the interviews are that the Family Centers were initially motivated to carry out adoption family programs for three principal reasons: they located many families (in need of adoption family program); potential adoptees were interested in the program; adoption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pre-existing programs such as Self-help Group and Co-parenting Space. Workers in the study also reported that they approach to an adoption family and their contemplation on ways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adoption families. They don't have any official and formal manual or guidelines from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offices such as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s a result, the workers at Family Centers have endeavored to gain connection with Adoption Agencies in hopes of cooperation with them and to improve the services at Family Centers. For benefits of Family Centers as a delivery system, they mentioned nationwide infrastructure, family professional, and arrangement of integrated program for family. For improvements, they listed awareness education based on a thorough consideration of adoptee's varied characteristics, close cooperation with adoption institutions, provision of basic operational manual from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nd governmental efforts to enlarge the consideration pool for families.

Key words: Adoption family support service, Family center, Adoption family, Various types of families

I. 서론

가족 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 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을 규정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입양(adoption)은 자신이 태어난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Brodzinsky & Schechter, 1993; 권지성, 2004).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출산을 감소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미혼부모 혼외자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아동인구 천 명당 약 0.6명대를 나타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입양으로 가족을 만나는 수치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0년 보호대상아동 8,590명 중 16.2%인 1,393명이 입양으로 보호조치 되었으나, 2020년 4,120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1%인 88명만이 입양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아동의 대다수는 아동(보호)시설(66.1%)과 위탁가정(31.7%)을 통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우리나라 입양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이 많아졌으며, 유자녀 가정의 입양률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부모자격 강화, 법원허가제 등으로 입양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1~2020년까

지 국내 입양아동은 21,7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통계청, 2022) 입양아동에 대한 조사나 통계는 여럿 찾아볼 수 있으나, 입양 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가족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들의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공개입양문화가 확산된 지 20여년이 되어가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백경숙·변미희, 2001; 권지성, 2004; 류현, 2009; 박미정, 2008; 최슬기, 2019; 이선형·임춘희·배지연, 2021) 일반인에게는 언론에서 보여지는 연예인의 입양가족되거나 아동학대 사망사고 등의 특수한 경우의 사례가 보여지고 있을 뿐 우리 주변에 보편적인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일 뿐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 가족의 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가족은 가족이 갖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입양에 의한 가족형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수한 욕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의선(2016)은 국내 입양부모의 특성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는데 적극적으로 부모가 됨, 소수집단에 속함, 부모자격을 검정받음, 부모기에 늦게 진입함, 부모의 입양동기가 사회적 편견과 맞물림, 덧붙여진 부모과업 있음(입양사실 알려주기, 편견 대처하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들 가족에게는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의 독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입양이라는 가족형성의 독특성은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Brodzinsky, Smith & Brodzinsky(1998)는 입양가족에 대한 발달과업을 부모와 자녀의 차원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입양가족의 발달과업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입양가족에게 존재하지 않는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입양 말하기’이다. 입양부모는 공개입양이라 할 지라도 입양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한 상황에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가족원들간 새로이 부과된 발달과업의 달성은 입양부모 역할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입양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한 가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차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가족센터(통합센터)는 전국 206개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서울에는 25개 구마다 모두 설치가 되어있고, 경기도 경우에도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되어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가족센터가 가족에 대한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센터의 경우 일부의 시군구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적은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매뉴얼이나 지역센터의 총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한 경우는 없었다. 입양가족들은 입양소개 기관을 통한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인력이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이선형 외, 2021).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입양가족을 명시적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 즉 가족교육이나 상담, 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은 가족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입양가족에게도 적용해 볼 만하다.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선행연구에서 1인가구인 이용대상자들은 가족센터 이용의 강점으로 가족에 대한 전문성, 다양성, 체계성 등을 들고 있었다(송혜림 외, 2019). 또한 배윤진(2017)의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지속성 강화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더불어 입양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패키지의 개발·보급,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가족센터는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전달체제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인프라를 갖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과 이들 기관이 갖고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 등은 이들을 입양가족 지원에 활용해볼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가족복지 서비스로서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입양가족과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1) 입양가족의 현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제1원칙은 ‘아동은 가정환경속에서 자라야 한다’이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입양을 통한 안정된 가족의 형성은 아동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이처럼 입양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대상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제도로써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개인적·가족적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 애정과 보호를 통해 아동의 성장을 돕는 측면이 크다.

우리 사회가 가족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입양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입양 문화가 확대되었음은 유자녀가정의 입양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2017년 입양통계 결과(아동권리보장원, 2017), 유자녀 가정의 입양률이 34.4%로 난임가정에서 입양을 한다는 편견을 넘어, 일반가정에서도 입양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입양동의수준이 2.6점에서 2015년 2.9점으로 가족형성 가치관의 수용 수준이 점차 높아진 점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0, 2015).

한국사회는 과거의 대를 잇기 위한 혈연중심적인 비밀입양에서 이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아동친화적 공개입양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만, 입양에 대한 보편적 가족형성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밀입양’의 소재가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입양부모를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좋은 사람들’로 인식하거나, 입양아동은 ‘사춘기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등의 편견을 가진 것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신정훈,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양의 보편화, 공개입양가족의 확대, 자조모임의 확산, 입양지원서비스의 확대, 반편견입양교육의 확대 등으로 점차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입양의 통계는 입양아동 인구수로 집계되지만, 입양가족의 통계는 공식적으로 인구특성별, 지역별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가 많지 않다. 가령, 입양가족은 입양아

동수당을 수령하는 아동수+부모수(+유자녀)로 추정될 수 있으나, 공개입양가족 뿐 아니라 비밀입양가족도 포함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수당을 거절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입양과 관련한 통계는 입양아동수(국내, 국외), 입양아동 발생유형, 이들의 성별과 연령, 장애(건강이상) 여부, 부모의 소득, (기존의) 자녀여부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 통계에서는 2001~2020년까지 국내입양아동이 21,647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통계청, 2022) 부모와 자녀를 포함할 경우 2배 혹은 3배로 추정하면 64,941명~86,588명 정도, 가구 수로는 2만1천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입양가족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모, 입양아동(유아, 청소년기, 청년기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입양 이후,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공개입양이 확대되고, 입양특례법(2012년)이 전면 개정된 후 사후관리 강화, 예비부모 입양교육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입양가정 서비스들은 비밀입양 전통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문제가 일어난 경우, 입양가족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현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권지성 외, 2018) 서비스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의 책무에서 입양아동과 가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방정부별 조례에서도 입양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3조, 각 지방단체별 입양가정지원조례).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는 구체적으로 입양 활성화 및 지원정책수립, 사후절차 구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홍보, 사례발굴, 행사실시 등의 책무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비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2).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는 입양축하금지원, 양육수당추가지원, 각종 교육비 지원 등이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다(전국입양가족연대, 2020). 다음으로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인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현재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한편, 공개입양가족은 공개입양을 촉진해 온 입양가족단체들이 입양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후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입양기관들도 독자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족 캠프와 같은 것을 기관별로 실행하고 있다(권지성 외, 2018). 공개입양가족들에게 자조모임은 적극적인 참여영역으로써 자

조모임을 통해 입양가족들은 정보교류와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상호지지의 만족감을 얻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참여율은 84.2%로 높았고, 캠프 및 행사 참여가 57.7%, 부모교육 참여가 51.5%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참여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배윤진, 2017).

현재로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입양아 및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주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양특례법에 의한 예비입양부모교육, 국내입양기관·단체·자조모임 지원, 입양인(가족) 통합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가족지원사업만으로는 전국의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지역적 접근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배윤진(2017)의 보고서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가족들 위주로 서비스가 홍보되거나 실시되는, 즉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알고 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족들은 원거리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입양이후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권지성 외, 2016), 입양이후 서비스는 지역별, 입양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제공하는 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가족 캠프 등은 제공되는 횟수나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쉬웠다고 하였다. 전국단위 입양가족캠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며,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캠프 프로그램(예, 사춘기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지역별 자조모임의 개선방안으로 모임의 장소섭외(지원), 또래모임의 필요성과 재정적 지원, 지역모임 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권지성 외, 2018). 또한 입양가족을 위한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입양아동과 부모의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서비스 제공, 자조집단 활성화,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의 연령 연장, 사후서비스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한 바 있다(권지성 외, 2016).

이렇게 입양가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의 부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세부지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한부모가족도 특수한 욕구를 갖는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의 틀이 존재한다. 그러나 입양가족의 경우 이들의 지원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법률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2. 입양가족의 서비스 지원 욕구

앞서 언급했듯이 입양가족의 실태와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입양가족의 욕구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교적 최근의 관련 입양가족의 서비스 이용 현황(배운진, 2017)과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장창수·배지연, 2016), 국내 입양부모의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권지성 외, 2016) 등을 통해서 입양가족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지원 욕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입양을 하는 부모들은 입양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선형 외, 2021). 입양부모들은 입양 전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입양의 우려와 만류, 반대 등을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으며,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편견 등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안재진, 2008). 입양전의 스트레스 외에 입양 후에는 양육과 다양한 입양편견에 대처, 부모과업(입양사실 알리기 등) 등의 발달과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장창수 외(2016)에 따르면, 양부모는 아동 양육시 '양육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26.3%), '이웃 및 학교 등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13.2%)을 호소하였다. 또한 입양부모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욕구는 입양의 부정적 인식 전환 교육(3.55점), 아동수당 추가지원(3.34점), 심리정서치료(3.26점), 전문상담서비스(3.24점)의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즉, 입양부모들은 자녀양육시 양육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운진 외(2016)의 연구에서 입양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는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8.7%). 입양사실 공개 방법, 입양사실로 인해 자녀가 빼돌어지거나 성장후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자녀연령이 증가하여도 유의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배운진(2017)은 입양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입양부모로서 입양공개 이슈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입양 후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영아기일 때는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방법, 입양관련 이슈나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발달단계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입양부모는 입양사실 알리기, 편견에 대처하기, 아동양육하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조모임의 활성화, 입양인식전환이나 전문상담서비스와 같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입양아동과 부모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자조집단 활성화,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의 연령 연장, 사후서비스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조모임 활성화와 같은 경우, 입양가정 안에서 부모와 아동의 발달주기별 또래모임 지속을 위한 장소, 재정적 지원, 부모의 자조모임 집중을 위한 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입양가족 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부모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자조집단 운영, 가족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가족센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이 갖는 공통적인 욕구와 더불어 특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교육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입양가족의 특성상 비밀입양 가족이나 공개입양이라 하더라도 드러나기 원치 않는 특성을 보임으로 일선 센터에서는 대상자들과의 접근이나 만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관들은 입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자 면접(FGI)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양 가족 대상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 이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IRB에서 승인된 공고문을 가족센터 사이트(페밀리넷)와 실무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학회에 모집공고를 싣고 1차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2개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모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팩스 번호가 가능하고 전국 배분을 고려한 5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팩스를 발송하였으며, 추가로 1개의 기관이 모집되었다.

가족센터 특성상 가족교육과 상담, 가족문화 등의 프로그램이 기본 틀이 되지만 각 센터마다 약간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최대한 다양한 팀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다루는 팀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기존의 입양가족이 갖고 있는 특수한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입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관(예: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한국입양홍보회 등)중 2개의 입양기관도 인터뷰에 포함하였다. 이들 기관은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인 가족으로서의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타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중복서비스 제공이나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 정립

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보았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모집은 인터뷰 대상인 가족센터와 교류가 있는 입양기관을 소개받았으며, 그 기관의 입양서비스 담당자로 최근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내용의 취지를 밝히고 동의서와 설명서,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서명하였다. 가족센터의 경우 시도나 구별로 하나의 기관씩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기관명이나 지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터뷰 도중 중단해도 된다고 사전 고지하였다. 인터뷰 시기는 2021년 6-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장소는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지정하는 곳을 이용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명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명이 모일 경우 각각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는 지역이 분산되어있어 연구자들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에게는 아래 <표 2>를 기본으로 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미리 면접 질문과 동의서를 읽어볼 시간을 제공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당 1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으며,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프로그램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질적 연구로 논문을 3편 이상 쓴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전사를 통해 분석되었다. FGI 방법은 질적 연구법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의도적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사 례	연령/성별/전공	직위/근무기간	담당 프로그램	입양가족 프로그램 경험*		
가족 센터	1	40대/여/사회복지학	팀원/5년	교육	◎	
	2	50대/여/사회복지학	팀원/3년	상담	○	
	3	40대/여/가정학	사무국장/12년	총괄	○	
	4	40대/여/사회복지학	팀장/3년	상담	○	
	5	50대/여/사회복지학	팀장/15년	교육	○	
	6	30대/여/사회복지학	팀원/5년	교육(현재)	◎	
	7	40대/여/사회복지학	팀장/13년	총괄팀장	○	
C센터	8	30대/여/사회복지학	팀장7년	교육상담	◎	
	9	30대/여/사회복지학	팀장5년	운영	○	
입양 관련 기관	D기관	10	40대/여/교육학	팀장9년	입양상담	◎
	E기관	11	30대/여/사회복지학	팀장/9년	총괄	◎
		12	30대/여/사회복지학	팀원/7년	입양상담	◎

* ◎는 주담당자

<표 2> FGI 질문과 연구내용 요약

구분	주제	목표
1) 도입 질문	(1) 입양가족 프로그램 진행 경험 (2) 타기관의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괄적 소개	현황 파악 및 입양 프로그램 개괄 소개
2)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진행 경험 (*가족센터 종사자만 해당됨)	(1) 어려웠던 점 (2) 좋았던 점 (3) 보완점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점 파악
3)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단점	(4) 장점 (5) 단점 (6) 기타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도출
4)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지원 가능성	(7) 지원 가능 영역 (8) 프로그램 제공시 보완 방향	프로그램 제안 방안
5) 마치는 질문	(9) 미래 전망	가족센터의 역할 정립 및 모형 제시

으로 선정된 그룹의 역동을 응용한 정보과약 방법이다. FGI는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선정된 소수의 특정한 참여자 집단을 심층 면접하는 것으로 집단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집단 내 개인들의 관점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그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rueger & Casey, 2000).

FGI에 의한 자료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자료에 친숙해지는 것으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듣고 읽으면서 인터뷰의 세세한 내용과 전체적인 인터뷰에 대한 감각을 갖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의 연구 문제에 따라 전사 내용에 메모를 해가면서 짧은 문구나 내용에서 떠오르는 개념을 적고 주제가 되는 틀(thematic framework)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자료의 색인을 다는 과정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인용문을 찾아 분류하고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의 사례 내에서 그리고 사례 간에 응답한 내용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단계는 기록하는 것으로 새로 발전시킨 주제의 내용에 적합한 원자료의 인용문을 재배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즉 연구주제인 질문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이 의미상 공통적이거나 유사해 보이는 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주제에 적합한

내용들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총 26개의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4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제 1저자가 먼저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한 뒤에 공동연구자와 공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가족센터 관련 질적 논문이 있거나 가족센터 실무자로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교수와 가족센터와 입양기관 실무자들에게 보내어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논문을 작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시작과 확대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입양프로그램 담당자와 입양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얻은 자료 분석 결과 총 4개의 주제와 2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

주제	하위 주제
1)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시작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의 일환 ■ 자조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타 프로그램으로 확장 ■ 프로그램의 긍정적 평가가 타 프로그램으로 확대 ■ 입양가족에 대한 주요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 ■ 타 기관의 공모사업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확장
2) 프로그램 영역별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사업 ■ 자조모임 ■ 상담사업 ■ 돌봄 프로그램 ■ 교육사업 ■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과 캠페인
3) 입양가족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의 긍정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대상자에 대한 포괄성 - 통합적 프로그램 접근의 용이성 - 상주하고 있는 가족 전문가의 활용가능성 - 전국적인 인프라 활용 가능성 ■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프로그램의 공개적 진행 및 활성화 -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욕구 호응
4) 입양가족 프로그램 제공시 필요한 것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적인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 특수욕구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 입양가족 노출 정도에 대한 고려 - 입양기관과 인근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역할 배분 ■ 정책적인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족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시스템 지원 -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관심과 의지 - 일선 가족센터의 수용가능 인력 등 상황에 대한 고려 → 필요시 센터 수 확대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의 일환

가족센터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어떤 다양한 가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고, 입양가족은 이를 통해 발굴된 형태의 가족이었음이 언급되었다.

저희 센터가 이제 18년도부터 통합이 됐었는데, 이제 가족센터 사업에는 주축으로 했던 게 가족의 건강성, 그리고 이제 다문화는 조기 정착이랑 한국에 정착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었고.....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중 일부가 입양이기도 했고. 그래서 입양 가족을 한번 모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고(사례 8, 가족센터)

2) 입양가족에 대한 주요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센터가 입양가족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요 당사자, 즉 고위 공무원, 입양기관 기관장이나 가족센터 센터장,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관심 있는 교수, 입양기관 담당자, 자조모임 대표의 적극적 관심과 추진 노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 단절됐다가 2018년도에 기관장님(입양기관)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바뀐 이후에 저희 센터에 다시 부모교육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거절 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사례 3, 가족센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협의체에서 만나면 “우리 이런 프로그램, 가족들 프로그램 있어요.” 항상 얘기하시고.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기관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입양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사례10, 입양기관).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됐던 게 저희 센터도 입양가족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거 인식은 있는데 입양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000 대표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품앗이 이 쪽에는 그룹을 구성하면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굉장히 의지가 크셨어요(사례6, 가족센터).

우선은 00 건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입양 관련된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같은 건물 안에 00대 심리센터가 있었고. 또 가족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하는 접촉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사례11, 입양기관)

3) 자조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타 프로그램으로 확장

공동적으로 자조모임은 동일한 관심과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상호원조를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입양부모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조모임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자조모임활동이 타 프로그램으로 연계·확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고 있다. 자조모임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기존에 형성된 자조모임이 가족센터와의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와 가족센터를 통해 자조모임이 형성된 경우의 사례가 있었다.

생애주기 별 교육 사업 맡을 때. 아버지 역할 지원에 아버지 자조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입양가족 대표님 통해서 같이 자조모임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2019년까지의 아버지 역할 사업을 했었고(사례6, 가족센터)

이분들이 우선은 그 연대가 있었고 이제 하나씩 이제 꼬리의 꼬리를 물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연간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도 최대한 맞춰드리고...사실은 모 집하는 데 쉽지는 않았죠. (입양가족) 노력이 우선은 적었고 이제 한 분이 딱 트시니까. 알고 계신 분들 이제 함께 해 주셨어요(사례8, 가족센터)

4) 타 기관의 공모사업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확장

가족센터 자체의 매뉴얼에는 명시적으로 입양가족 지원 내용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지원이나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자원을 발굴하여 입양사업이 확장되도록 하는 노력을 직원들이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A센터의 경우, 입양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력을 보였다.

18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던거거든요.....입양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되고, 서비스를 줘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평등하다는 입장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평등 교육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랑 성교육 같은 거 (사례9, 가족센터)

16년에 저희가 이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입양기관하고 연계를 해보면 어떻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입양기관에서 다행히 검토하셔서 예비 입양부모 교육 하루 진행하실 때 오전 2시간을 할당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 상담 팀장님이 강사로 했었어요(사례1, 가족센터)

5) 프로그램의 긍정적 평가가 타 프로그램으로 확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입양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가족교육이나 품앗이,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5, 6, 7월 이렇게 매월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캠프도 같이 갈래요 그랬어요. 거기서. 8월에 캠프 있는데 그때도 와서 혹시 부모 교육 해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사례3, 가족센터)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입양부모로서가 아니라 입양부모 등 일반가정인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다 같다 이렇게 말을 서로 얘기하시면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부부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래서 아이도 알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한 번 얘기해 보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내년에는 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게 2020년 반영이었는데 (사례1, 가족센터)

2. 프로그램 영역별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

1) 문화사업

일반적으로 가족센터에서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했던 것이 가족의 달 행사를 통해 가족캠프나 걷기대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가족모임과 여타 프로그램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들고 있었다. 이는 비입양가족들이 입양가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5월 달에 저희는 그 요청을.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 안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16일간 언택트 걷기 대회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5월 11일

입양의 날 기념.....그때 이제 품앗이 회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걷기대회 참석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사례6, 가족센터)

2) 상담사업

상담사업은 가족센터의 가장 기본 사업이지만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대상 가족 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서 가족상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 실무자는 입양과정중 입양기관에서 부모와 아동의 여러 특성을 가장 잘 알게되므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가족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센터와 연계되어있는 경우에 입양가족들은 부부상담, 부모상담, 자녀놀이치료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아동을 잘 알고 있고, 부모님도 저희가 엄청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입양 진행 기간 2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아이는 저희가 생일 초가지만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친 생부모 생물학적 배경도 잘 알고 있고, 엄마의 특성 굉장히 면밀히 알고 있고. 부모님의 특성. 저희는 입양 진행할 때 상담을 하면 심리 상담하는 것 이상의 정보들이 수집이 돼요. 경제력, 사회적인 거, 신체적, 의료적인 정보. 정말 굉장히 많고(사례10, 입양기관)

우선 접근성이 다 오픈이 되어있고 가족이라는 타이를 안을 가지고 오실 거고. 네. 특별하게 원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가족 상담을 더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자녀 놀이 치료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8년도랑 19년도에도 계속 꾸준히 상담을 계속 했었거든요(사례8, 가족센터)

3) 교육사업

입양가족에 있어서 양육과 발달과업 등을 위한 부모교육이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생애주기별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욕구가 있어 이러한 점은 비입양가족과 같은 욕구를 가지지만, 입양가족마다 입양의 상황이 다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도 일부 언급되었다.

입양을 하는 상태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시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또 상황들, 가족들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부모님도 입양에 대해서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런 게 조금씩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사례6, 가족센터)

4) 자조모임

자조모임은 입양가족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 모임을 통해 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후속 프로그램들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아동의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 입양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모여서 온 경우도 와서 친해진 경우도 있으며, 같은 경험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워낙 분위기 자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조모임을 하고 계신 거 안에서 저희가 거기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 분위기 자체가 우선 융합이 되어있으신 거죠. 다 자발적이신 거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으니 받아들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셨을 거라고(사례1, 가족센터)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 과정이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 센터의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우선 자조모임 식으로 운영이 됐고... 저희는 이게 좀 전통이 되게 깊어요.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센터에 두 가지 자조모임단이 좀 유례가 됐는데, 하나는 가족봉사단(난타 봉사단)이 12년 됐고 그 다음이 입양이예요(사례8, 가족센터)

5)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과 캠페인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를 입양가족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이해교육과 캠페인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가족문화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18년도에 다름이해 존중 교육이라고... 한국 입양 홍보에서도 하는 반 편견 입양 교육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양한 가족이 있다. 그래서 가족이 사는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가족이다. 이 포인트로 저희는 갔죠.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캠페인, 제가 말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공개 캠페인 이런 건 있었던 거 같아요(사례8, 가족센터)

그러니까 입양 가족 인식 개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입양 가족과 함께하는 걸기 대회를

를 했고 그 안에서 대표님이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픈 안 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융화돼서 살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견기대회가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돼서.... 품앗이 회원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사례6, 가족센터)

6) 돌봄 프로그램

입양부모는 난임기간 이후 입양하는 사례가 많거나, 유자녀가 있는 상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입양부모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낳은 자녀가 있으면서 입양하는 경우는 여러 연령대(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기)의 돌봄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욕구로 프로그램이 파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유아기 아이들 놀이라든가 이런 문화 체험 같은 거를 아빠랑 아이랑 같이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하는 활동을 한 번 먼저 해드렸었고. 두 번째는 너무 노는 거보다는 교육적인 것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로 아버님만 몇 분 해가지고 교육은 6명 해서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사례7, 가족센터)

3.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로서의 가족센터

입양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가족센터의 긍정적인 측면

(1) 가족 대상자에 대한 포괄성

가족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족센터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과 생애주기별 일반 욕구 충족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다.

저희 센터가 좋은 점이 가족이라는 큰 범위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종합, 노인센터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다는 게 저희 센터의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양 가족이 오셨을 때도 다 좋았고(사례7, 가족센터)

가족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

한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기관이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앞으로 점점 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기관이란 말이에요.여태까지 입양가족 하면 왠지 나는 입양을 한 것을 아이에게도 주변에게도 다 숨기고 싶어했던 게 사실이었던지 지금 공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사례10, 입양기관)

(2) 통합적 프로그램 접근의 용이성

가족센터는 초창기부터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가족문화라는 삼각 트라이앵글의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고 현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파생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다각도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인력구성으로 이들에게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저희가 늘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정서랑 교육이랑 문화를 같이 들고 가요....건강성도 지켜야 하면서 때때로 교육도 필요하고, 네, 너무 교육만할 수 없으니 가족의 친화를 위해 문화도 하시거든요 항상 센터장님 마인드가 그러서 가지고.....교육이랑 이제 문화 체험을 같이 겸하는 거였고, 특별히 이번엔 원하셨던 거는 부모 자녀 집단상담이셨거든요(사례9, 가족센터)

또 이제 생애주기 별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사례관리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저희 센터 큰 장점이어서 입양가족기관이 있지만 이제 어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센터가 이 사업이 참 맞다 생각해요....가족은 결국 다 똑같잖아요. 입양이라는 그거 다를 뿐이지 키워가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사례6, 가족센터)

(3) 상주하고 있는 가족 전문가의 활용가능성

입양기관의 주요업무는 입양 매칭사업이며 법적인 사후관리는 1년이기 때문에 입양 1년 이후의 가족에 대한 지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법적, 행정적,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 입양아동과 가족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 전 예방적 차원이나 문제발생 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가족센터는 입양기관이 갖고 있는 직접 서비스 지원(상담)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자원(가족센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분들을 알고 이 필요한 분들을 배치할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에 세팅 되

어 있고, 그래서 입양 기관의 역할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구에 가시면 돼요. 또 어느 어디가 다른 특색이 있으면 거기는 △△구로 가시면 돼요. 라는 것들을 입양 기관에서 잘 연계해 주는 게 저는 적절한 입양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해요(사례10, 입양기관)

우선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실은 있으신 기관이잖아요. 가족센터는. 그러면 사실 가정도 입양 가정도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혜택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강점을 부각해 주시고 해주시되(사례11, 입양기관)

첫 번째는 부모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8년경 이때 입양부모 강사를 잠깐 양성 교육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이틀간인가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그때 저희 선생님들을 다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게. 네 부산이랑 서울이었나....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 하셔서 그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셨고...기존에 이제 부모 교육 강사 관련 자격증이 있고(사례1, 가족센터)

(4) 전국적인 인프라 활용 가능성

입양기관의 경우 전국에 있는 입양가족을 지원할 인적, 물적 자원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가 없는 현실이다. 입양가족이 보편적 가정의 형태로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형태로 인식이 바뀌어가기에 원하지만, 별도의 입양가정지원센터(가칭)를 만들 경우 이들을 분리할 가능성과 공개를 원치 않는 가족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고 부모님들은 지방 곳곳에 전국 곳곳에 퍼져 있으니, 이제 수혜자는 항상 가까운 곳에 서울 경기 충청권 계신 분들만 좀 많은 수혜를 받으시는 것 같고, 이제 지방이나 제주도 쪽, 섬 쪽은 저희가 가지 않는 한은 좀 그 안에 자조적인 모임, 그 지역 안에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까지는 저희가 깊이 관여는 못 해드리는(사례10, 입양기관)

우선 가족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자

원들이 있으시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다뤄보신 다양한 경험들. 이제 어쨌든 공식적, 비공식적 인프라 자원들을 활용해서서 욕구에 맞는 개별,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사례12, 입양기관)

2)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사항

(1)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공개입양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 가족센터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상자 모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담당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걱정은 향후 입양기관, 자조모임, 상위기관과의 연계모집 등 다양한 홍보와 맞물려 있다고 보여진다.

모집이 사실 어렵고요. 때때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있잖아요. 네, 실무자로서. 근데 또 이제 현장에 있는 양육자로서는 그래도 이거는 아직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서(사례7, 가족센터)

실제로 입양 가족이 오픈하는 가족도 있고 오픈하지 않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입양 가족에 대한 사업이 나와, 내려왔다.... 프로그램이야 가족센터가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나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모집 단계에서부터 많이 힘들 거 같은 거예요....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하면 모집이 1차적으로 안 될 것 같다 라는 예상이 되고요(사례6, 가족센터)

(2) 프로그램의 공개적 진행 및 활성화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 입양가족을 명시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저희가 실무하면서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입양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아요(사례7, 가족센터)

그 입양이 아직도, 아직도 그래. 저희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지 못하는...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가족이 왔을 때에는 왜 이렇게 홍보하나 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아예 입양 가족 자조 모임이 '가족은 사랑을 싣고'여 가지고(사례8, 가족센터)

(3)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은 가족으로서 일반적 특성이 있으나 입양이라는 형태로 가족이 형성된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입양기관 실무자는 이들이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도깊은 상담까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다.

상담도 또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실 어떤 케이스들도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심리 상담은 필요한데 그럼 누가 주체가, 주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예를 들어 입양 가족에 대한 정말 깊은 상담까지 해소해 줄 수 있는 상담일 것인지(사례11, 입양기관)

4.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프로그램 제공시 고려사항

1)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입양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국에 퍼져 있는 센터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 안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공부를 하셔야죠. 다 문화가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하실 때 거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하셨던 것처럼 입양에 대해, 입양 가족을 다루시기 위해서는 입양 가족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국장님들도 엄청 공부하셨어요(사례10, 입양기관)

반편견 교육이나 입양 교육 하다 보면 사실 그 구분 자체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상담 담당자)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나머지 분들 저 포함해서 입양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분들은 대해야 되고 어떤 상담을 도와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사례2, 가족센터)

(2) 특수육구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입양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일반육구뿐 아니라 그들만의 특수육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는 10회기 이상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가정이나 개별적인 입양가족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확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대상자가 좋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가장 많이 했었고, 저희가 18년도에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었어요. 입양가족을 대상으로...그게 왜 했냐면 저희는 3년마다 센터가 요구도 조사를 들어가거든요(사례9, 가족센터)

이게 10회기 20회기 정도 상담을 지원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문제 행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기관과 연계되어 있던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 지원해 주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족센터에 케이스를 의뢰했을 때 가족센터에서 스타디를 해서 정말 개별적인 가정 육구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실까....제 생각에는 시범으로 가보시고 시범에서 확장해 보고(사례11, 입양기관)

그러나 한 입양기관 실무자는 특수육구(특수성)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접근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입양은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뭐, 다양한 특수성이 있을 수 있죠. 그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뭐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성인 거고, 그냥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낳는 것도 특수성인 거고, 입양 그러니까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도 특수성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편하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혼자자 아니라, 사회가 같이 키워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사례10, 입양기관)

지역사회 상담은요, 가까운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 플러스 가기가 편한 곳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정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갔다 오면 지치니까, 상담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활 속에 코칭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양 기관의 부설센터

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날 잡고 가야 되고, 약속하고 가야 되고(사례10, 입양기관)

(3) 입양가족 노출 정도에 대한 고려

일선 기관에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이거나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입양프로그램인지를 알리기 어려워 대상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프로그램을 했던 센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공개와 노출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맞는 거 같아요. 저희 어제도 일요일에 부모교육 했거든요. 입양가족 부모교육인데. 어, 막 이렇게 ppt 첫 화면에 입양부모교육 이렇게 쓸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부모와 아이 이렇게 띄우는데 거기 참여자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입양 교육을 하러 왔는데 제가 생각한 교육이 아니네요.” 들어보면 맞지만.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입양을 쓰자니 또 좀 불편하실 것 같고(사례3, 가족센터)

그래서 저희도 공개를 좀 못한 솔직히 실적이 못 넣은 게 좀 됐었어요(사례7, 가족센터)

(4) 입양 기관과 인근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역할 배분

일선 입양기관이 입양하는 부모의 육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기관의 의견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된대로 현재와 같이 입양에 대한 분위기가 공개입양가족중 소극적인 경우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했을 때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때 서로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역할이 사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입양 주체 기관과 가족센터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이제 겹치면 서로의 의미를 잃어가는 부분일 것 같아서(사례8, 가족센터)

입양과 관련된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동권리보장원도 본인들만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 사후 지원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가족센터도 여성가족부니까. 또 산하기관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서 서로 분절적이지 않

고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통합되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사례11, 입양기관)

2)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

(1) 입양가족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시스템 지원

현재처럼 정량적인 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아지도 않는데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입양가족 대상자를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서비스 지침에도 명시적 대상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나 프로그램 시간 고려, 소수의 인원이라도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라는 뭔가 특별한 생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어놓고 하더라도, 아니면 저희는 모아서 오시면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면 최소 5명이라도 모아서 오시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입양기관)쪽과 이쪽 관련해서 예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이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상관없이 이 만큼이 왔던 것 같아요(사례1, 가족센터)

또한 이 항목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입양 가정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버지 역할 지원 예산도 적고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자(사례6, 가족센터).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입양 가족을 위해서 저희 진행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사례9, 가족센터)

(2)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관심과 의지

C센터의 경우 조례가 생긴 지자체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입양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 현장 실무자들은 실무적인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인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예산이 돼서 입양 가족에 관련한 업무를,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애

기는 아직은 없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바로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가족 사업이니까 웬만한 건 저희 거의 다 내려 오잖아요. 그러면 입양 가족도 가족 쪽이니까. 저희한테 의뢰할 만한데 아직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건기 대회 한 것도 알고 있고...아직 뭐 저희한테 문을 두드리시거나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사례6, 가족센터)

(3) 일선 가족센터의 수용 인원 등, 상황에 대한 고려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이 가족센터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대상자에 대한 욕구는 가족이라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예를 들면, 다문화와 한부모, 이혼 재혼 가족, 특히 입양가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루어지기에는 현재 센터는 수용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하고 있다.

상담이 대기가 많은데 입양까지 들어오면.... 여기도 만족 못 시키고 저기도 만족 못 시키고. 지금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부모님들도 왜 그거를 가족센터에서 못해 주냐. 한부모님들도 왜 다문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입양이라는 걸 저희가 입양 센터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는 거랑 가족센터에서 그걸 다 아울러서 접근했을 때는 어쨌든 어느 층에는 일부만 그냥 일회성으로만 이것들이 제공되고(사례5, 가족센터)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리를 해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정부에서 구축을 해야지. 지금 상담 선생님들 대기자가 있어서 그것도 커버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입양까지 하면 이제 인력을 더 많이 이렇게 늘려서 입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전문화시키면서 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더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사례5, 가족센터)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 중 입양가족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있는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프로그램 담당자와 일선 입양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센터에서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파악한 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의 일환으로 입양가족을 바라보았던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가족센터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오고 있으며, 그 시도의 일환으로 입양가족이 발굴된 것이다. 또 다른 계기의 경우 가족센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 즉 센터장과 고위공무원, 기관장, 입양기관의 장, 자조모임 대표 등이 입양가족에 대한 강한 의지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모든 센터가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이 입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에 관심과 의지를 보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센터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입양가족 자조모임이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입양가족을 지원할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자조모임이 입양가족을 접촉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경험은 프로그램 영역별로 약간씩 상이하나, 각 센터가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반 프로그램들인 자조모임, 공동육아나눔터, 가정의 달 행사가 이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타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자조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의 활동은 가족교육과 가족상담으로 이어졌고,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통한 문화사업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으로 파생되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입양가족도 보편적 가족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센터와 접촉점을 찾았으나 그 이후 부모교육이나 상담의 프로그램은 이들만이 갖는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입양가족만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에 이르면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으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입양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즉 모든 가족은 생애주기별로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 욕구가 존재하므로 가족센터는 이러한 점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대상자에 대한 포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입양가족을 별도로 대상으로 하는 센터나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의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입양가족임이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가족센터는 이러한 점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가족들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센터는 초창기부터 교육과 문화, 상담이라는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해오고 있어 통합적 프로그램에 대한 접

근이 필요한 입양가족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가족 전문가인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가족상담가, 부모교육 전문가 등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고 있었다. 또한 가족센터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입양기관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다면 가족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설립이 되어있어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가족센터가 갖는 강점으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송혜림 외, 2019).

넷째, 가족센터가 전달체계로서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대상자들과의 접촉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다. 입양기관은 입양가족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입양가족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대상자들과의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워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입양기관에서는 가족센터가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공개입양모 대상 연구(이선형 외, 2021)에서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입양기관이 아닌 대학이나 지역의 가족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한시적인 부모교육이나 상담, 입양관련 행사라도 참여한 경험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행사성이거나 입양가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시적으로는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욕구를 갖는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입양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서로 간의 역할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측면인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일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시스템적인 지원(예산 지원과 입양가족 카테고리 구분)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입양가족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차이가 있었고, 소관 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져 있어 적극적으로 가족센터에 요청하지 않는 지자체 등 차이가 나서 이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 2020)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을 포괄하겠다고 하고 있어 입양가족도 이 모든 가족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문에는 몇 차례 언급되지 않고 있다(배지연·이선형, 2021). 이번 계획에서 포괄할 가족의 범위와 대상은 넓어졌으나 가족센터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가족센터 종사자 중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전문성을 다 갖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의 포괄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수반될 때 양질의 가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예산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2. 제언 및 실천적 함의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역할 정립을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일환으로 입양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입양가족 대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가족센터는 전국적 인프라, 전문성이 있는 인력, 통합적인 가족 프로그램 접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바 입양가족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서비스 지원을 고려해볼만 하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양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가족에게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입양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입양관련 대화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입양아동은 주위 친구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수록(안재진 외, 2010),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를 더 자주 나눌수록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최운선 외, 2019)를 볼 때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의 증가 및 아동의 입양사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일반가족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입양가족의 접착점을 찾기 위해서는 입양기관과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우선시된다. 입양가족은 가족형성의 차이로 비입양가족의 발달과업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 Brodzinsky et al. (1998)는 입양가족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으로 학령전기의 경우 부모는 '입양에 대해 말하는 과정 시작하기'와 '이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가족분위기 만들기'를 들고 있다. 가족센터 종사자는 대상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가족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반편견입양교육 강사파견을 통해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해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활용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입양가족도 다양한 가족 대상자에 포함시켜 애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성을 넓히고자 하였을 때 고민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세상의 모든 가족'이라는 기치로 가족에 대한 포괄성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성을 넓히면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기관 수와 인원을 유지하면서 포괄성 확대와 전문성 유지는 종사자의 희생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입양가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5조 1항,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입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처럼 관여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입양가족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가족에 대한 일선의 가족센터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과, 이것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매뉴얼 제공, 정부 부처간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회예산정책처(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2) 권지성(200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아동복지학*, 17, 7-48.
- 3)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2), 345-366. DOI : 10.13049/kfwa.2016.21.2.8.
- 4)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18). 입양부모의 입양 관련 활동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입양가족캠프, 자조모임, 입양합창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5(2), 57-82.
- 5) 김외선(2016). 국내입양부모교육에 관한 방안 고찰. *부모교육연구*, 13(1), 109-127.
- 6) 류현(2009). 공개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입양공개에 대한 태도가 자녀와의 입양관련대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미정(2008).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배윤진 · 김아름 · 송신영 · 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9) 배윤진(2017). 입양가정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335-346.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10) 배지연 · 이선형(2021). 입양가족의 시각에서 살펴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21(5), 233-233.
 - 11) 백경숙 · 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 ·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과권리, 5(2), 81-95.
 - 12) 보건복지부(2021). 2020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세종 : 보건복지부.
 - 13)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세종 : 보건복지부.
 - 14) 송혜림 · 윤소영 · 고선강 · 강은주(201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1-15. DOI : 10.22626/jkfrma.2019.23.2.001.
 - 15) 신정훈(2015). 입양에 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아동권리보장원(2017). 2017년 입양통계. 서울 : 아동권리보장원.
 - 17) 안재진(2008). 국내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2(1), 71-87.
 - 18) 안재진 · 권지성 · 변미희 · 최운선(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2.
 - 19)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 서울 : 여성가족부.
 - 20) 여성가족부(2010, 2015). 가족실태조사 결과분석. 서울 : 여성가족부.
 - 21) 여성가족부(20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 : 여성가족부.
 - 22) 이선형 · 임춘희 · 배지연(2021).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적응과 입양관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연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양모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정책, 25(3), 47-68. DOI : 10.22626/jkfrma.2021.25.3.004.
 - 23) 장창수 · 배지연(2016). 대전시 입양가족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연구. 대전 : 대전발전연구원.
 - 24) 전국입양가족연대(2020). 지방자치단체별 입양조례현황 및 개선방안. 21대국회 입양정책마련을 위한 입양가족대토론회, 17-21.
 - 25) 최슬기(201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최운선 · 안재진 · 변미희 · 권지성(2019). 국내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과권리, 23(3), 553-578.
 - 27) 통계청(2022). e나라지표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율. <http://www.index.go.kr>.
 - 28) Brodzinsky, D. M. & Schechter, M. D.(1993). Being Adopted. New York : Anchor Book.
 - 29) Brodzinsky, D. M. Smith, W. D. & Brodzinsky, B. A.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SAGE Pub, Inc. DOI: 10.4135/9781452220581.
 - 30) Krueger, R. A. & Casey, M. A.(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d ed. Thousand Oaks, CA: Sage.

■ 투 고 일 : 2022년 03월 23일
 ■ 심 사 일 : 2022년 04월 13일
 ■ 계 재 확 정 일 : 2022년 04월 19일